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18가단129524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늘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2021. 1. 12.

판결 선고2021. 2. 2.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8,605,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2,135,2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영업활동 및 원고의 세차기 설치 준비

- 1) 원고는 시내버스 여객 운수사업, 차량수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2) 원고는 서울 강북구 D 소재 차고지에 세차기를 설치하기로 하여, 세차기계, 폐수처리시설, 토목공사로 나누어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다.

가) 그 중 세차기계에 관한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세차 방식	·버스 이동형(세차기 고정)·혼합(이동, 고정 가능)·휠 세척(옵션 선택, 솔 형태)	·휠 세척(내장형, 물 고압 세척)	·버스 이동형(세차기 고정)·세척 기능 없음	·혼합(이동, 고정 가능)·휠 세척 기능 없음
세차기 재원	너비(4.8m), 길이(2.7m), 높이(4.9m)	너비(4.3m), 길이(2.0m), 높이(4.2m)	너비(5.0m), 길이(2.66m), 높이(5.2m)	너비(4.7m), 길이(1.8m), 높이(5.9m)
세차 시간	5분/대	4분/대	3분내(월 세척 시 1분 추가)	6분/대
물 사용량	150L/대	150L/대(팀세척 시 450L/대)	300L/대	200L/대
전기 사용량	5.6KW	15KW(월 세척 시 11.5KW)	12KW	11.7KW
특징	·국내 생산 제품(센서만 수입)·스테인레스 프레임·PLC제어(버튼식)·경기도권 버스회사 다수 설치	·독일제 부품 사용·아연도금 프레임·LED 패널 및 제어(터치식)·안전장치(세차기 전복방지, 안전사다리, 배상책임보험 등)	·현재 설치 제품과 동일	*스페인 수입 제품
A/S기간	2년	1년(협의 가능)	2년	1년
금액(부가세 별도)	53,566,500 원(및 세척기 9,000,000 원 포함)	55,000,000원	55,000,000 원	63,800,000 원

나) 다음으로 폐수처리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I(기존 거래 업체)	약품 처리 방식	24㎡/일	·설치 공간 및 약품(20L/일) 사용 최소화·약품 보증시기 알림 기능 등	1년	12,000,000 원
-------------	----------	-------	---	----	--------------

다) 끝으로 토목공사에 관한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금액(부가세 별도)	45,393,000원	44,511,958 원	45,000,000 원
------------	-------------	--------------	--------------

나. 세차기계 설치 및 토목공사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9. 26. 피고와 계약금액을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납기를 2017. 11. 8.까지로 하여, 세차기와 그 설치에 필요한 제품(토목공사 포함, 이하 '세차설비'라 한다)을 공급받는 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1) 대금지불조건은 계약 시 계약금 10,000,000원, 세차설비 설치 후 인도 시 중도금 20,000,000원, 시운전 등 원고의 검사승인 후 잔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잔금 지급 시 일괄 지급한다(제5조).

2) 하자보증기간은 갑의 검사승인일부터 2년간이고, 을은 잔금 수령을 위해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차설비의 하자로 인하여 불만이나 문제점이 제기되어 갑이 보수를 요청한 경우 을은 신속하게 보수하여야 하고, 을은 하자보수의무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세차설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실액 변상하거나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제9조).

3) 을이 납기까지 세차설비를 납품하지 못할 경우 갑은 납기 경과일로부터 매 1일마다 해당 납품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공제할 수 있고, 다만 천재지변이나 갑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또는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제10조)

4)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안에 납품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이 계약이행을 포기한 경우, 기타 을이 본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갑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제11조).

5)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본 계약서에 정한 을의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이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거나 갑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3조).

6) 계약서에는 첨부서류로, 계약물품내역표와 현장설치도 도면 3장(4개의 수조 중 신수조, 집수조, 우수분리조는 12.5톤으로 용량 표시, 재활용조에는 표시 없음)이 붙어 있다.

다.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인허가 대행계약

원고는 2017. 9. 27.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와 계약금액을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납기를 2017. 11. 13.까지로 하여, 이 사건 세차장과 관련하여 세차시설 관련 폐수처리장치 제작 및 납품, 계약물품 설치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및 관할 지자체 인허가 업무 등에 관한 납품 및 인허가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폐수처리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의 세차기계 설치 및 토목공사

- 1)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폐수처리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공정표에는, 2017. 9. 26.부터 2017. 10. 13.까지는 I이 건축 등 관할 관청 인허가를 받는 기간으로, 2017. 10. 16.부터 2017. 11. 8.까지는 피고가 토목공사와 세차기 설치 및 시운전을 하는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 2) I은 이 사건 폐수처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세차장 부대시설공사 설계도면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강북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관련 신청을 하였다.
- 3) 이후 강북구청의 보완요청에 따라 원고는 2017. 10. 26. 강북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따른 보완서류'를 제출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무게 50톤 초과, 부피 50㎥ 초과, 수평투영면적 50㎥ 초과인 공작물은 위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완내용은 수조 전체 용량 및 수평투영면적이 50㎥ 미만이므로 위 법률 제88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면서 첨부서류로 토목탱크 평면도 및 단면도를 제출하였다.
- 4) 강북구청장은 2017. 10. 31. 원고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처리 알림'이라는 문서를 보내어, 설치신고 처리를 알리니 면허세를 납부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받고, 설치를 완료하여 가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가동시작신고를 하라는 등의 내용을 알렸다. 강북구청장이 2017. 10. 31. 발급한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에는 업종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공통시설)', 폐수배출시설 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 '8시간/일, 300일/년', 수질오염방지시설 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 '8시간/일, 300일/년', 세차차량 사용량 '100대/일', 폐수배출량 '20m²/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2017. 11. 15.부터 2017. 11. 20.까지 기온은 -1.1도에서 -6.6도 사이였고(그 기간 중 평년기온은 1.4도에서 3.2도), 2017. 11. 21.부터 2017. 11. 30.까지 기온은 1.3도에서 -5.2도였으며(0도 미만 8일, 그 기간 중 평년기온은 1.7도에서 -0.2도, 0도 미만 1일), 이러한 기온 저하로 인하여 피고는 세차설비 설치공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6) 피고는 2017. 11. 말경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세차기(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공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중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겨울 추위로 콘크리트 양생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피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 세차설비의 시운전을 미루었다.

마. 세차설비의 작동 및 하자의 발생

1) 원고의 신고에 따라 강북구청장은 2018. 2. 19. 원고에게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 처리 알림'이라는 서면을 보내어, 신고한 시설의 가동시작 예정일로부터 30일간(2018. 3. 20.까지) 시운전기간으로 부여하고, 시운전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2018. 4. 4.까지)에 시설의 설치 상황과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최종방류수를 채수하여 환경오염도를 검사할 예정이라는 등의 내용을 알렸다.

2) 원고는 2018. 3. 16. 피고에게 '세차기 토목공사 하자 보수 및 프로그램 수정 요청의 건'이라는 서면을 보내어, 2018. 2. 19. 시운전을 개시하였으나, ① 3번, 4번 수조 누수에 대한 보수, ② 물량 부족으로 인한 108대 차량이 1일 세차가 불가능하여 근본적인 대책 수립, ③ 세차 솔의 부적절 작동(㉠ 차량의 앞면에 세차기가 접촉하기 전부터 물과 솔이 작동하여 불필요한 물과 전력이 사용되므로 차량이 접촉되는 시점에 작동하도록 수정, ㉡ 측면 솔이 차량 앞부분에서 약 1미터 정도 지나서 작동하여 1미터 앞 부분이 세차가 되지 않으므로 측면솔 작동 시점을 조정, ㉢ 측면 솔의 회전방향이 차량의 돌출형 번호판의 장착방향과 반대로 되어 있어 훼손이 우려되므로 회전방향을 기존과 반대로 작동되도록 수정, ㉣ 윗솔이 차량의 후면 세척 시 1회만 위아래 왕복으로 세차할 수 있도록 수정 요청, 1회 위아래 왕복 시 교차점에 윗솔의 회전방향 전환, ㉤ 측면솔 후면 세척 시 양쪽 측면솔 간의 유격 발생으로 인한 세척이 안 되는 부분) 등의 수정사항 발생으로 세차기의 사용이

불가능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인 세차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3. 18.경 수조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 등을 하였다.

3) 원고의 변경신고에 따라 강북구청장은 다시 2018. 3. 19. 원고에게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 처리 알림'이라는 서면을 보내어, 앞서와 같이 변경신고서의 가동시작 예정일로부터 30일간의 시운전기간 부여,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 검사 예정이라는 등의 내용을 알렸다.

4) 원고는 2018. 4. 25. 피고에 '세차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해제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원고의 '2018. 3. 16. 하자 통보'에 대하여 현재까지 부분적인 방수공사만 시행하였을 뿐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고, 물량 부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2018. 5. 8.까지 세차기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관할 구청으로부터 받은 허가마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손해배상청구와 계약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렸다.

5) 피고는 2018. 5. 11. 원고에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해제 요청에 대한 답변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일부 하자에 대해 사과하고, 누수 문제는 수조의 균열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수조 시공 시 방수공정의 누락으로 발생한 단순 하자로, 이에 대하여 방수공사를 시행하였고, 안전상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고, 물량 부족 문제는 연구팀에 의뢰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요청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하자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알렸다.

6) 원고는 2018. 6. 11. 피고에 '버스 세차기 토목공사 재시공 요구'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어, 피고의 답변과는 달리 외부 토목공사 업체들은 수조 시공 시 방수공정의 누락은 향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내구성 저하로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크기에 맞는 수조의 재설치 등 세차기 토목공사의 재시공을 요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렸다.

바. 하자에 관한 감정 결과

이 법원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계약서 첨부 도면은 신수조 12.5톤, 재활용조, 집수조 12.5톤, 유수분리조 12.5톤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장에 설치된 시설은 신수조 8톤, 재활용조 4.8톤, 집수조 12톤, 유수분리조 6.4톤으로 시공되어 있고, 이는 인허가 계약서에 첨부된 도면과 같이 시공된 것이다. 현재 설치된 수조 4개를 철거하고 각 12.5톤으로 재시공할 경우 공사비용은 108,605,032원이다. 수조용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수조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방법보다는 기존 수조가 설치된 상태에서 별도의 신수조용 물탱크를 지상에 추가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 원고가 2018. 3. 13. 집수조와 유수분리조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하였다는 것인데, 그 누수방지비용은 11,135,245원이다. 누수공사와 관련 피고가 시공한 시멘트액체 방수공법은 시공가격이 저렴하고 시공 및 보수가 용이하며 방수체가 습윤한 상태에서도 시공이 가능하고 정밀하게 시공 시 성능이 양호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통상적으로 시공하는 적절한 누수보수공사로 판단된다.

3) 세차기 가동상태는 세차할 버스가 세차위치에 정위치한 후 세차기 작동버튼을 눌러 작동개시된 후부터 세차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시간이 2분 55초이므로, 약 3분에 버스 1대의 세차가 가능하고, 버스의 대기시간과 이탈시간을 합하여 4분에 1대꼴로, 1시간에 15대의 버스를 세차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4) 세차 진행과정에서 버스 지붕 부위에 세차 솔이 닿지 않았고, 세차 정위치에 서있는 버스의 1미터 가량 뒤부터 측면솔이 작동하였으며, 버스 뒷문(외벽보다 10cm 들어감)에는 측면솔이 닿지 않았고, 버스 후면부의 하단부분은 세차가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별도의 수리비용 없이 기계조정을 통해 밀착도를 올리거나 세차효율이 떨어진 부분은 전류값 조정 등으로 효율성 개선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9, 11부터 14호증, 을 제1부터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 15호증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L의 증언, 증인 M의 일부 증언, 감정인 N의 하자 및 보수비용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1)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세차설비에는 세차용수 부족, 수조 누수, 세차 솔의 부적절 작동 등의 하자가 있었고, 특히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것보다 저용량의 수조를 설치하였다.
- 2) 피고가 이 사건 세차기를 설치하여 인도하기로 한 날은 2017. 11. 8.인데, 실제 인도한 날은 2018. 2. 19.이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다.
- 3) 토목공사 시 원고의 요구사항(콘크리트 양생 보완조치 요구, 수도관 깊이 매설, 전기 사용량 과다 없도록 조절 요청), 계약 시 고정식 세차기 설치 요청이 반영되지 않았다.
- 4)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원과 이 사건 세차기를 재시공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 108,605,0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1) 하자 여부 가)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도면과 달리 저용량의 수조를 설치함으로써 세차용수 부족의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도면에서는 4개의 수조 중 3개의 용량이 12.5톤으로 표시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세차설비의 수조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가 있어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이에 따라 원고는 I과 이 사건 폐수처리계약을 체결하고, I로 하여금 폐수처리장치 등의 설계도면 작성 및 관할 지자체 인허가 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I의 설계도면에 기초하여 강북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관련 신청을 하였다가 강북구청의 보완요청에 따라 2017. 10. 26. 강북구청에 관련 법률과 저촉되지 않는 수조 전체 용량이 50㎥ 미만인 도면을 제출하여, 2017. 10. 31.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실, 피고는 위 신고 수리된 도면에 따라 이 사건 세차기의 수조를 설치한 사실 역시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위 신고 수리된 도면에 기초하여 세차기가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피고에게 I로 하여금 수조의 설계 및 인허가대행을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도면에 맞추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갑 제15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M의 일부 증언은 을 제4호증 및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 작성의 도면은 I의 설계도면이나 위 신고절차에 반영되지 않은 이상 참고용

도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수조 용량 부족 또는 세차용수 부족의 하자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수조 누수의 하자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시운전 이후 일부 수조에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누수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고, 즉시 피고가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주장의 하자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누수 하자 보수가 부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끝으로, 세차 솔의 부적절 하자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 세차 솔의 부적절 작동에 관한 하자를 지적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세차 솔의 부적절 작동은 앞서 본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비추어 피고가 별도의 비용 없이 기계조정을 통하여 손쉽게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세차기의 세차 솔 자체에 이 사건 계약이나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다1218 판결 참조).

2) 공사 지연 부분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세차기의 설치 및 인도 완료시점이 2017. 11. 13.로 되어 있고, 원고가 2018. 2. 19.경 강북구청으로부터 배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 수리를 받아 이 사건 세차기를 작동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의 채무이행은 강북구청의 신고 수리시점 이후에야 가능한데, 이러한 신고 수리가 2017. 10. 31.에야 이루어져 피고가 뒤늦게 세차시설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2017. 11. 30.경 완료하였는데, 계절 변화와 이상 저온(공사기간 중 14일 가량 기온이 0도 미만)으로 인해 공사에 지장을 받았던 점, 시운전 지연은 겨울 추위로 콘크리트 양생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피고의 의견을 원고가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사 지연에 관하여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의 요청사항 미반영 부분 원고 주장과 같은 요청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거나 피고가 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증인 M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설령 해제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세차설비의 하자로 인한 세차 불능에 따라 세차를 위하여 추가 투입한 인력 2인에 대해 1인 월 3,000,000원씩 지출함으로써 2018. 2.부터 2020. 5.까지 발생한 81,000,000원의 손해, 수조 누수 하자공사비용 11,135,245원의 합계 92,135,2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세차기 설치공사 착수 30일(그 중 기온 0도 미만인 기간 14일)만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로부터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받은 즉시 1일 동안 누수 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였음에도, 원고가 누수 하자에 대한 추가적 보수를 요구한 사실, 더구나 원고가 이 사건 폐수처리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설계도면을 충분히 검수하여 시정하지 못함으로써 수조 용량 부족 문제가 발생한 것임에도, 수조의 토목공사를 맡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피고에 대해 수조 용량 부족을 주된 하자로 지적하면서 그 시정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맞추어 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던 중 원고가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손해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상규